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암표매매 금지 >
■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899호)

202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요지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유경준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2023. 12. 13.
3. 회 부 일: 2023. 1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등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확산되고 있음. 특히 결승전 등 중요 경기의 경우,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을 정도로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입장권 등의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표 매매 단속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홍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표 판매 행위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압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 압표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연 온라인 압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이와 같은 입법례에 따라,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스포츠 경기에 대한 온라인 압표행위를 규제할 타당성이 인정됨.

이에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압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제14조의5, 제49조의2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입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②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③ 관람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영업장 등에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5(관람권등의 부정판매 금지)</u> <u>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관람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람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람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람권등을 판매하는 자·관람권등 판매를 수탁받은 자(이하 “관람권 판매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9조의2 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 금지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람권등의 검표방법, 부정판매 확인 시 입장·예매 취소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	---

2. 검토의견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매매는 뮤지컬, 공연, 스포츠 경기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중음악과 프로스포츠 분야 암표 신고는 2020년 각각 359건, 6,237건에서 2023년 각각 2,161건, 51,951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 암표매매는 입장권 등의 시장 가격을 급등시켜 시장을 교란하고, 이로 인해 음악, 예술, 스포츠 실수요자들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할 필요가 있음.¹⁾

[표] 대중음악·프로스포츠 연도별 암표 신고건수

(단위: 건 수)

	2020	2021	2022	2023
대중음악	359	785	4,244	2,161
프로스포츠	6,237	18,422	36,823	51,9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암표매매를 근절하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매매 금지 및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잡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관람문화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1) 참고로, ‘2023년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따르면, ‘암표 거래 지출 증가 시 변화’에 대해 응답자들의 25%는 ‘해당 가수의 공연 관람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답하였고, ‘암표 거래 사기 피해 시 심경 변화’에 대해 응답자들의 36.4%는 ‘모든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라고 답하였음.

다만, 국회는 지난해 문화·예술·체육 전 분야에서의 암표매매 근절을 위해 각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는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²⁾(2023.2.27. 의결, 2024.3.22.시행),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³⁾(2023.7.18. 의결, 2024.2.9.시행)을 각각 의결한 바 있으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체육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의결하였는바, 동 법률은 2024.9.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공연법」(법률 제19245호)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체육시설법」(법률 제20360호)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0193호)과 개정안 조문대비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0193호) [2024.2.29.의결, 2024.9.27.시행]	개 정 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관람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관람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람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람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람권등을 판매하는 자·관람권등 판매를 수탁받은 자(이하 “관람권 판매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9조의2 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 금지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람권등의 검표방법, 부정판매 확인 시 입장·예매 취소 조치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	--

따라서 개정안은 최근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법률을 참고하여 시행 예정 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안의 차별성, 입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 예정인 법률에 의해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반영되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